

의안번호	2204619
의 퇴 인	김대식 의원
회 답 일	2024.10.16.
추 계 번호	24C427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 (경비보조 등)	(제1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에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2	안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19조 (과태료)	(제1항) 제1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경비보조 등) 안 제16조(업무의 위탁) 안 제19조(과태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의 예산 범위에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부의 소관업무 일

부를 협의회에 위탁 처리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¹⁾

-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격대학은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도 실시되고 있지 않음
 - － 원격대학 관련 사업으로는 성인학습자 비대면 교육 수요 확산 대응 및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모델 개발 사업”이 있으며, 2024년 총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²⁾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안을 근거로 운영지원 또는 위탁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여부 및 그 규모와 위탁하게될 구체적 사업의 내용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 대학 및 전문대학 협의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근거 법률³⁾⁴⁾에 따라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사업(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조사업, 2024년 773백만원),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사업, 2024년 737백만원) 등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시 개정안 시행 이후 해당 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 또는 위탁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 예산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1) 또한, 안 제19조에 따라 협의회가 아니면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위반횟수 및 금액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2) 제한경쟁을 통하여 지원대학이 선정되며, 2024년에는 1개교당 3.5억원씩 총 4개교에 지원(자료: 교육부 2024년 사업설명자료)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기능), 제9조(경비보조 등) 및 제17조(업무위탁)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경비보조 등) 및 제17조(업무위탁)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